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702호

2. 발 의 자 : 곽향기 의원 등 27인

3.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4.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Ⅱ.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원활한 학습 및 건강 유지에 지장을 주고 있음.
- 이에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Ⅳ. 관련법령

- 1. 관계법령:「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및 시행령
- 2.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입법예고: 2024. 4. 12. ~ 4. 16.(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곽향기 의원 등 27인에 의해 의 안번호 제1702호로 발의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3년간(2021~2023년) 초·중·고 학생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도 당뇨 학생 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1] 최근 3년간 초·중·고 당뇨 학생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丁正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전국	817	980	1,314	3,111	913	1,180	1,562	3,655	1,030	1,176	1,649	3,855
서울	112	123	156	391	123	127	209	459	138	107	157	402

* 출처: 2023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4.1. 기준)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제1형 당뇨병1)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

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2).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290회 정례회(2019.12.20.)를 통해 학교 내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동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매년 소아당뇨 학생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당뇨 학생의 실태조사 및 의료적, 교육적, 환경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개별적인 건강상태의 파악 및 이에 따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정책 지원은 응급상황 발생시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3) 및 정부부처 정책4)을 반영하여 학교의 장에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질병 공개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용이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¹⁾ 제1형 당뇨는 자가면역,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가 원인으로 주로 사춘기 이전 저연령에서 발병하고, 제2형 당뇨는 유전적 경향이 강하며 비만, 노화, 스트레스 등에 의해 진행되어 사춘기 이후 40대 이후 중년기에서 주로 발병함 (교육부, 「2019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 라인」, 2019.9. p.3).

²⁾ 교육부, 「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2024.1. p.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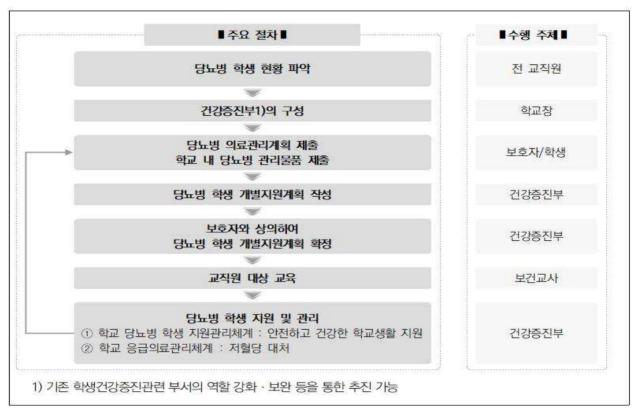
^{3)「}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x27;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교육부, 2024.1.,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소아내분비학회,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2019.9.

[그림-1] 서울시교육청 당뇨학생 지원관리 체계



*출처: 「2024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보건)」, 서울시교육청, 2024.2.

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안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당뇨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질병에 대한 공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생 건강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서도 학생이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사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cdot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생 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실을 공개할 경우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하도록 명시⁶⁾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 제1항은 법률과 지침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자칫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병에 대한 정보공개로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는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항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진료 및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항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항은 앞에 규정한 사항들에 관해서 학교장이 관련 기준 및 지침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부7의 의 및 서울시교육청8의 기본계획에서는 학교별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⁶⁾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소아내분비학회,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2019.9. p.9. 참조

^{4.} 학교에서의 당뇨병 관리 일반 원칙

① 당뇨병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며, 인슐린 주사 혹은 혈당검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다.

② 당뇨병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도움을 주어 저혈당 혹은 고혈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이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④ 급식의 경우 인슐린을 주사한 당뇨병 학생은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 당뇨병으로 인해 운동, 체육활동, 수업 등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⑥ 당뇨병 학생이 마음 편하게 병원 진료를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격려한다.

⑦ 시험 등 특수상황에서 학생의 혈당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⑧ 그 밖에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배려를 적극 지원한다.

⁷⁾ 교육부, 「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2024.1.

⁸⁾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2024.2.

따라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 (제1형, 제2형) 학생 재학현황을 파악하여 학생별 관리체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⁹⁾, 당뇨병 학생들의 급식 및 체육 시간 등 증상 발생 시 학교 측에서 지원과 배려를 통해 혈 당측정 및 휴식장소 제공 등 적절한 조치¹⁰⁾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 제2항부터 안 제4항은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088, 2024. 4. 15.).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시관	이현주(2180-8272)
	UL \-\-\-		L (L

^{9)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¹⁰⁾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소아내분비학회,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2019.9. p.102. 참조